2017년 외래본인부담금 인하

임신부/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본인 부담 인하

2017년 1월 1일 부터 임신 ·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%로 적용해야합니다.

- 임신부: 임신 전 기간에 걸친 외래 본인부담률 10% 적용
- 조산아 및 저체중아 : 만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% 적용
-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등록번호를 MT051에 기재 해야 됨
- 진료실 프로그램에서 환자선택 후 환자정보특성에 임신부 및 조산아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해당 기간동안 본인 부담율이 10%로 적용됩니다
- 산부인과 희망제작소 home

「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」개정

- 1) 의료급여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27730호, '16.12.30일 공포, '17.1.1일 시행)
- 2) 의료급여법 시행규칙(보건복지부령 제459호, '16.12.30일 공포, '17.1.1일 시행)
- 3)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(고시 제2016-272호, '17.1.1일 시행)
- 4)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고시 제2016-245호, '17.1.1일 시행)
- 5) 임신·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(고시 제2016-246호, '17.1.1일 시행)

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"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"를 "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를 삭제하고,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.

제17조의8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8(임신부,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의료급여)

① 영 제13조제1항 별표 1 제2호 자목의 "임신부"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(유산·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)을 말하며, 차목의 "만3세까지의 조산아(早産兒) 및 저체중출생아"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기간은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의료급여 산모의 특정내역 기입방법

- ullet 의료급여 1종과 2종 산모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. 아니 입력하면 에러가 떨어집니다.
- 의료급여 2종 산모 기입사항: CT,MRI, PET와 관계있는 병의원은 코드기입시
 - 특정기호 F015 외에
 - 특정내역-본인부담 구분코드 B010